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1

제출년월일 : 97년 8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도 실질적인 실무급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

물가대책위원은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장”을 “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근거법령 :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97. 7. 4일자 충청북도조례 제2331호)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관 및단체의 장”을 “기관및단체의실무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 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② - - - - 부시장 - - - . ③ - - - - - - - - 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p>
<p>제9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p>	<p>제9조(실무위원회) ① - - ② - - ③ - - - - - 산업경제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p>